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컨설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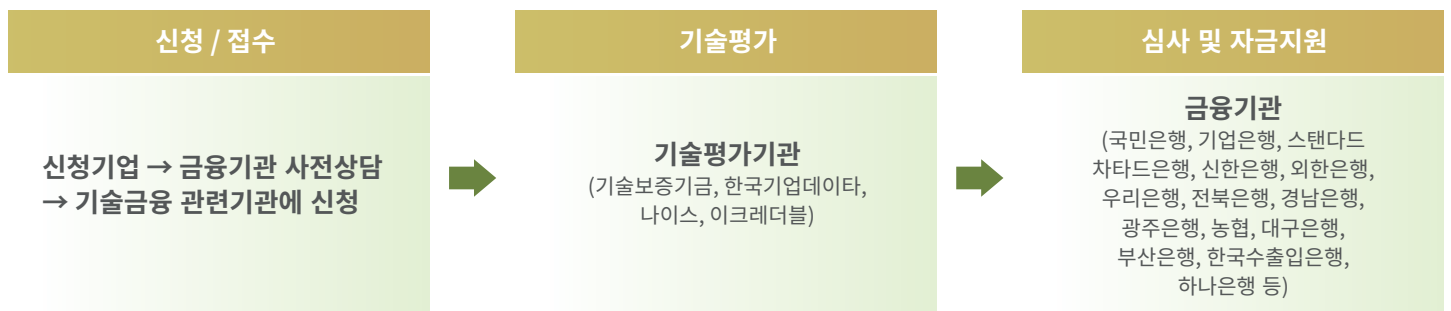


기술금융

■ 개념과 목적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종래 사용해오던 재무정보 이외에 기술정보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신용도 판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화 자금 대출 및 펀드운용사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술금융 진행절차



1. 금융기관 상담

→ 사업신청자격을 가진 기업은 금융기관 지점 또는 담당자를 방문하여 사업 및 여신 등에 대해 사전상담 진행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우선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지점 또는 담당자와 해당 기술금융상품여신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해당지점 요청 시 필요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금융기관 지점과의 사전상담 후 평가기관에 평가신청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금융기관 지점과의 사전상담 및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기술금융 온라인포털시스템 (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때,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명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 신청기술이 등록특허인 경우 '특허 또는 실용실안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등

3. 기술평가 :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력 수준을 예비적으로 검토하여 기술평가 실시여부 판단

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상담을 통해 진행가능여부를 확인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력 수준을 예비적으로 검토하여 기술평가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술평가 실시가 확정되면 신청기업은 선택한 기술평가기관과 표준계약서에 의거하여 평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기업은 기업부담금(50만원)을 기술평가기관에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에 대한 신청기업의 권리를 기술평가기관에 양도합니다. 그 다음 기술평가기관은 자체 기술력 예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결과가 소정의 등급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서를 신청기업이 선택한 금융기관에 우선 송부하고, 신청기업에게는 금융기관 송부 후 3주 후 송부하게 됩니다.

기술평가의 기준은 다음 4가지로

- 1)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능력,
- 2) 기술성
- 3) 시장성
- 4) 사업성

등 개별항목 평가를 토대로 종합기술력평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4. 심사 및 자금지원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기업에 통보합니다.

펀드운용사의 경우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투자심의를 토대로 투자여부, 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 기대효과

기술평가 보증이나 대출 등 여신 기반 중심의 기술금융체계는 기존 담보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금융선진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